

초등학교(동작)

번호	명 칭	위 치
39	서울 봉 현 초 등 학 교	관악구 봉천2동 1704

별표2중 중학교(동부)의 “동대문여자중학교”란을 “동대문중학교”로, 중학교(남부)의 “오류여자중학교”란을 “경인중학교”로, 중학교(중부)의 “장충여자중학교”란을 “장원중학교”로, 중학교(강동)의 “명일여자중학교”란을 “명일중학교”로 명칭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중학교(성북)의 “수송중학교”란 다음에 “삼각산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0
------	-----

2002년 12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12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2002년 1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전장하)

- 가. 개정이유
  - 「葬事등에관한法律」 내용에 맞게 조례의 체계 및 명칭을 정비
  - 시립 장묘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함.
  - 시장은 자치구의 공설 화장장·공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토록 함(안 제4조, 제5조).
  - 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사용료와 관리비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결정하고 저소득시민 등의 감면과 타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를 다르게 적용토록 함(안 제7조제2항).
  - 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연장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

-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葬事등에관한法律」의 입법취지에 따라 시립묘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장사(葬事) 일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본 개정조례(안) 제3조의 장사문화(葬事文化) 개선에 관한 선언적 규정과 이를 위하여 자치구가 공설 화장장과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조항은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됨.

☞ 葬事등에관한法律 제4조, 제31조제1항 관련

-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보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립묘지를 별표로 적시(摘示)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한 것은 향후 서울시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공설화장장이나 공설납골시설까지 자칫 시립묘지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으므로 시립묘지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관련

- 시장이 시립묘지 등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사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인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 관련

- 시립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및 그 감면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이를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使用料의 徵收條例등)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사항이 되겠음.

☞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 관련

-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시립 장묘시설 사용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는 분묘 사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5~30년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묘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장기 대책 없이 시립 장묘시설의 사용기간을 단축하려 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서울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포기하기 위한 수순(手順)」은 아닌지 하는 것이라 하겠음.

☞ 葬事등에관한法律 제5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5항 관련

- 요컨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葬事등에관한法律」의 내용에 맞게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법령상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립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